

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2019. 12. 5.~12. 20.

조 례 안 상 정
(9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9-142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9-143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9-144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2019-145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
2019-146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19-147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5
2019-148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7
2019-149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1
2019-15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4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현행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엄격한 여비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방법을 정함(안 제2조, 별표 1)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5조)

- 1) 여비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
- 2) 여비 부정 수령 행위 명시
- 3) 환수절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15.~1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거창군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을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 수령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알리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존 제5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안전부와”를 “인사혁신처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기존 별표) 비고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4호(기존 제5호) 중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u>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p> <p>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u>제3조(여비의 지급구분)</u> ① <u>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u>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p> <p><u>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u>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u>별표</u>에 따라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u>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p> <p><u><삭 제></u></p> <p><u>제3조(여비의 지급구분)</u> ① <u>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u></p> <p>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u>영</u>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p> <p><u>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u>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u>별표 2</u>에 따라 지급한다.</p> <p><u>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u>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 수령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알리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생략)

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현행과 같음)

[별표 1] <신 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가. 지급 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나.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4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사항은 조례로 그 대강을 정하여 군민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기준 등 기술적 사항이나 수시로 변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여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내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2조)

- 1) 임신과 출산 지원
- 2)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
- 3)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세대 지원
- 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
- 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나. 지원대상의 세부기준 및 신청·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제2항, 제3조)

다. 이중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4조)

- 1) 같은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 만큼 빼고 지원

라. 지원 중단 및 환수를 정함(안 제5조)

마. 인구증가 유공자, 단체 등에 보상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2,139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29.~11. 1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과 출산 지원

가. 출산 축하금

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다. 임신축하 기념품 등

2.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 양육지원금 지원 등

3.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

가. 전입정착금

나. 빈집정비 지원

다.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학생 생활관비 등 지원

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

가. 국적취득자 지원

가.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대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이중지원 제한)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혜금액만큼 빼고 지급한다.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제6조(보상) 군수는 인구증가 지원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유관기관·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중일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장려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증액 지원, 전입정착금 증액 지원,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

나. 관련조문 : 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2,139	2,139	2,139	2,139	2,139	10,695

3. 관련 의견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증액 지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전입 정착금 증액으로 유동인구 정착을 지원하며, 청년의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청년 유출 문제 해결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항 목	상 세 내 역
1. 출산축하금 지원 : 4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1,000천원×100명=100,000천원 ◦ 둘째 2,000천원×100명=200,000천원 ◦ 셋째 이후 3,000천원×50명=150,000천원
2. 양육지원금 지원 : 1,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100천원×100명×20월=200,000천원 ◦ 둘째 100천원×100명×20월=200,000천원 ◦ 셋째 이후 300천원×50명×60월=900,000천원
3. 전입 정착금 지원 : 18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세대 100천원×900세대=90,000천원 ◦ 2인 세대 200천원×200세대=40,000천원 ◦ 3인 세대 300천원×80세대=24,000천원 ◦ 4인이상 세대 500천원×70세대=35,000천원
4.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 : 2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천원×200명

작성자 :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4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2층 기획전시실을 나무상상놀이터로 변경·운영 계획에 따라 나무상상놀이터의 이용기준과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을 변경함(안 제4조)

- 1) 폐지 : 전시시설 중 기획전시실
- 2) 신설 : 체험시설 중 나무상상놀이터

나. 나무상상놀이터 이용기준 및 이용료 신설(안 별표 2)

- 1) 1일 3번, 회당 90분 운영 : 회당 6,000원
- 2) 이용시간 : 10:00~11:30, 13:30~15:00, 15:30~17:00

다. 차별규정, 용어 정비(안 제12조제1항제6호, 별지 서식)

- 1) 삭제 : 반려동물 동반입장 제한
- 2) 용어 정비 : 기획전시실 ⇒ 나무상상놀이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14.~11. 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을 “상설전시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상관”을 “영상관, 나무상상놀이터”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4조제1호에 따른 기획전시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를 “제4조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시시설: <u>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u></p> <p>2.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 체험장, 유아체험실, <u>영상관</u></p> <p>3. 편의시설: 중정(쉼터),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p> <p>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야외놀이 시설 등</p>	<p>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시시설: <u>상설전시실</u></p> <p>2. 체험시설: 초급·중급·고급 체험장, 유아체험실, <u>영상관, 나무상상놀이터</u></p> <p>3. 편의시설: 중정(쉼터),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p> <p>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야외놀이 시설 등</p>
<p>제8조(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 ① <u>제4조제1호에 따른 기획전시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제13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③ (생략)</p>	<p>제8조(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 ① <u>제4조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제13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5. (생략)</p> <p>6. <u>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u></p> <p>7.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p> <p>② (생략)</p>	<p>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5.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6.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삭 제></u></p>

[별표 2]

시설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이용기준	이용료	비고
체험시설	4시간	50,000원	
	1일	100,000원	
기획전시실	1일	100,000원	<삭 제>
나무상상놀이터	10:00~11:30 13:30~15:00 15:30~17:00	회당 6,000원	1일 3번 회당 90분

1. 체험시설은 이용시간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이용료 100,000원의 범위에서 시간당 10,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체험시설의 이용료 감경기준
 - 가. 5일 이상 이용: 20퍼센트 감경
 - 나. 10일 이상 이용: 30퍼센트 감경
 - 다. 20일 이상 이용: 50퍼센트 감경
3. 나무상상놀이터의 이용료 1000원 감경대상
 - 가. 군에 주소를 둔 군민
 - 나. 20인 이상 단체
4. 체험시설은 목재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용시간동안 일반 체험이용객은 그 이용을 제한함

[별지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남/여)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 []에는 이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목공체험실(초급)	목공체험실(중·고급)	카확전서실 나무상상놀이터
	이용인원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 귀하

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일반용지 60그램/제곱미터(재활용품)]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4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와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규정 명확화(안 제4조)
- 나.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8조)
- 다.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감면률 기준 구체화(안 제22조)
- 라.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안 제26조)
-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33조)
- 바.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34조)
- 사.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신설(안 제40조)
- 아.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41조)
- 자. 공유재산인 시장 내 점포 등의 화재보험 가입 신설(안 제4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 제68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1. 14.~11.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2조 중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50
2.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30

제26조,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소재지 및 시장명

3.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남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다만 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제41조,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손도장을 찍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보험가입)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 내 점포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u>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p>	<p>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u>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u>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u>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50

<신 설> 2.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30

<신 설> 제2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소재지 및 시장명
3.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남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다만 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군·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는 매각물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거창군 공중 화장실 관리조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 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손도장을 찍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41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

<p><u>제46조(시행규칙)</u>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p> <p><u><신 설></u> <u>제42조(보험가입)</u> 군수는 군의 공유 재산인 시장 내 점포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p> <p><u><삭 제></u></p>
---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4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군내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학교,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의2)

- 1)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 2) 노외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 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나. 규제개선, 용어순화(안 제8조)

- 1) 주차요금 미반환규정 삭제
- 2) 잔여 ⇒ 남은

다. 임신부 주차요금 감면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제7호)

- 1)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부칙)

- 1) 지원대상 : 학교, 공공기관,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을 하는 자
- 2) 지원범위 :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 3) 부칙에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세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12조의3, 제17조, 제21조의2

제6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상반기 20,000천원 예산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30.~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안 제9조제2항제7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임산부”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하 “임산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를 “임산부는”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공영주차장 관리자(관리 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관리·운영 해야 한다.

1. 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
2. 주차장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할 것
3.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것
4. 제복 착용 등 주차장의 관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제8조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주차권”으로 “환불한다.”를 “주차요금을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잔여매수”를 “남은 장수”로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

제11조의2, 제13조의2,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및 자동차 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① 군수는 학교, 공공기관,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주차관련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u>임산부</u>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u>임산부</u>”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u>모자보건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하 “<u>임산부</u>”라 한다)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임산부</u>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6조의2(<u>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u>) 공영주차장 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p> <p>1. <u>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u></p> <p>2. <u>주차장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할 것</u></p> <p>3. <u>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것</u></p> <p>4. <u>제복 착용 등 주차장의 관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u></p>
<p>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 (생략)</p> <p>③ <u>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u></p> <p>1. 회수주차권: <u>잔여매수</u>에 대한 요금</p> <p>2. 정기주차권: <u>잔여기간</u>에 대한 요금</p>	<p>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반환한다.</u></p> <p>1. 회수주차권: <u>남은 장수</u>에 대한 요금</p> <p>2. 정기주차권: <u>남은 기간</u>에 대한 요금</p>

제9조(요금의 감면) ① (생략)

②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9조(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6. (현행과 같음)

7.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 음식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및 자동차 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 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신 설>

제15조의2(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 ① 군수는 학교, 공공기관,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5조의2(부설주차장 무료개방 및 지원) ① 군수는 학교, 공공기관,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 경제교통과장 문 재 식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9-14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공간으로 조성된 거창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설치 및 위치, 기능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창포원 운영을 정함(안 제7조~제17조, 별표 1)

- 1) 개원 및 휴원 : 매일 개원, 필요시 임시로 휴원일 지정
- 2) 운영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 3)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 무료, 다만 재료비 등은 실비
- 4) 입장 및 행위제한
- 5) 편의안전 확보
- 6) 창포원 내 회의실, 온실 내 체험실 등 시설의 이용 신청
- 7) 식물의 수량 등 조정
- 8)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 9) 온실 관리 : 병해충 방제, 온도·습도 유지

라. 편의시설 운영(제18조~제22조, 별표 1~별표 3)

- 1) 키즈카페 및 북카페 운영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 키즈카페 입장료, 다만 북카페는 무료
- 3) 카페 위생 관리
- 4) 키즈카페 입장제한 및 퇴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144조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 931백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31.~11.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황강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이용객의 자연체험, 자연학습 및 관람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거창창포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자연체험, 자연학습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포원을 통하여 황강의 수질 및 경관 개선과 댐 주변 수몰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공간으로 거창창포원을 조성한다.

② 창포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남상면 창포원길 21-1에 둔다.

제6조(기능) 창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수질개선 및 생태자연관광 활성화
2. 생태습지 및 생태 숲 조성으로 생물종 다양성 증대
3.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연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
5. 키즈카페 및 북카페 등 운영
6. 그 밖에 창포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관리의 위탁) 군수는 창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개원 및 휴원) ① 창포원은 매일 개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개수·보수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중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창포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거나 휴원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시 휴원일 또는 변경 휴원일 5일 전까지
2.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운영중지 시작일 10일 전까지

제9조(운영·관람시간) ① 창포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체험프로그램 체험료 등)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군수는 창포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른 행위제한에 해당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안전 확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 후단에 따라 퇴장명령을 받고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

2. 창포원 주변에서 관람자 등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람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4. 관람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갖추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전 5일까지 별지 서식의 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목적이 창포원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식물의 수량 등 조정) ① 군수는 창포원 내 식물 종의 다양화와 재배 밀도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물의 매각, 교환, 구입 등의 방법으로 식물의 종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식물의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을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군 및 산하기관 등의 환경미화 등에 필요한 경우
2.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분양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온실의 병해충 방제 등) 군수는 온실 내에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모든 식물을 수시로 관찰하여 병해충방제, 거름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잡초제거 작업 등을 제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온실의 온도·습도 유지 등) 군수는 온실 내에서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온실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온실 내의 온도, 습도, 광선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편의시설 운영)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물품을 대여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카페,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키즈카페·북카페 운영시간) ① 창포원 내 키즈카페 및 북카페(이하 “카페”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키즈카페 입장마감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휴무한다.

②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카페 입장료 등) ① 키즈카페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북카페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키즈카페의 입장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카페 위생관리) 군수는 카페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위생상태 향상 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키즈카페 입장제한) 군수는 키즈카페 이용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 후 공공 및 안전 등을 위해 퇴장하는 경우에는 일일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창창포원 및 키즈카페 입장·행위 제한(제11조·제22조 관련)

<p>1. 거창 창포원</p>	<p>가. 입장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p>나. 행위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이물질 주입 등으로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내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무단으로 대소변을 보거나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6)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7) 노점상 등 영업행위 8) 그 밖에 거창창포원의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p>2. 키즈 카페</p>	<p>가. 입장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입장에 따른 수용인원이 입장객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될 때 3)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별표 2]

키즈카페 입장료(제20조 관련)

구분	어린이	성인
기본 2시간	3,000원	1,000원
10분당 추가요금	500원	-

[별표 3] 키즈카페 입장료 감면기준(제20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100분의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자녀 또는 손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10.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 이 경우 자녀 셋 모두 해당 	100분의 50

[별지 서식]

거창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남/여)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이용 시설 회의실 [] 온실 내 체험실 [] 그 밖의 시설 []	
	이용 인원	
	이용 목적 및 내용	
	이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변경사항	원 래	변 경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창포원 시설의 이용(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일반용지 60그램/밀리미터(재활용품)]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창포원 운영 및 관리

나. 관련 조문 : 제5조(설치 및 위치), 제6조(기능)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 비용	931	949	967	986	1,005	4,838	
세출	국비	-	-	-	-	-	
	도비	-	-	-	-	-	
	군비	931	949	967	986	1,005	4,838
	소계(a)	931	949	967	986	1,005	4,838

최근 5년 평균물가상승률 1.9퍼센트 반영

3. 관련 의견

가. 거창창포원의 관리 예산은 4계절 테마관광을 통한 전국단위 랜드마크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은 필요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인건비 : 414백만원

나. 일반관리비(제세공과금 등) : 379백만원

다. 재료비 : 15백만원

라. 연구개발비 : 40백만원

마. 자산취득비 : 75백만원

바. 그 밖의 경비 : 8백만원

작성자 : 환경과장 이 덕 기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4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정비함(안 제10조)

-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결정
- 2) 결정된 농업기계 임대료 매년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

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11조)

- 1)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반액 감면

다. 임대료 반환대상 확대(안 제12조)

- 1) 계약 만료일 전 농업기계 반납 :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라.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중복·재기재 내용 삭제(안 제13조·제17조제1호·제22조제3항)

- 1) 임대계약 취소, 농기계관리대장, 위원회 수당

마. 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19조)

- 1) 삭제 :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심의
- 2)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임대사업 계획의 적합여부만을 심의하도록 전국적 통일기준 마련

바. 그 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30.~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소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평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망

실.”을 “잃어버리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사업소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임차인”을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관리요원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결정하여 매년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

제11조제1호 중 “장애인으로서”를 “장애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관리요원”을 “군수”로 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1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기존 제3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기존 제4호) 중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기존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기계 임대차 계약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9조제2항 중 “소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이 임명 또는”을 “군수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호·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제6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제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기존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u></p> <p><u>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u>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u> <u>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u> <u>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 <u>4. “임차인”이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u> <u>②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임대사업의 범위)</u>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3.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제5조(임대사업의 지원)</u>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제6조(운영 및 관리)</u>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p> <p>②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③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p> <p><u>제7조(관리요원)</u>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u>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u>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p> <p>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p> <p>3.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제5조(임대사업의 지원)</u>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6조(운영 및 관리)</u> ① 임대사업소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p> <p>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③ 군수는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한다.</p> <p>④ 군수는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계약 및 교육) ① <u>임차인</u>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② <u>관리요원</u>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p> <p>③ <u>관리요원</u>은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p> <p>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단서 신설></p> <p>② (생략)</p> <p>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u>소장이</u>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10조(임대료) ① <u>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u> 기종별 임대료는 <u>별표를 기준으로</u> 징수하며, 임대사업이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③(생략)</p>	<p>제8조(계약 및 교육) ① <u>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u>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② <u>군수</u>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p> <p>③ <u>군수</u>는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p> <p>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u>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u>군수가</u>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임대료)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u>농업기계화 촉진법</u>」 제8조의2에 따라 결정하여 매년 <u>군 홈페이지, 공보</u>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장애인으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u></p> <p>2. (생략)</p> <p>제12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p> <p>1. <u>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u></p> <p>2. <u>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u></p> <p>3. <u>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u></p> <p>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 <p>1. <u>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u></p> <p>2. <u>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u></p> <p>3. <u>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u></p> <p>4. <u>임대료를 체납한 경우</u></p>	<p>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장애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u></p> <p>2. (현행과 같음)</p> <p>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p> <p>1. <u>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u></p> <p>2. <u>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u></p> <p>3. <u>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u></p> <p>4. <u>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생략)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u>관리요원</u>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p> <p>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6개월 제한 가.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3조 삭제 개정에 따른 내용변경 나.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p> <p>제17조(비치대장) (생략) 1.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임대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3.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p> <p>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소장</u>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u>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u>한다. ▷ 거창군 소속 자문위원회이 위원 위촉권은 “<u>군수</u>”에게 있음. 임명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 용어 ④ (생략)</p>	<p>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u>군수</u>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p> <p>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6개월 제한 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용 <u>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u> 나.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p> <p>제17조(비치대장) (현행과 같음) <u><삭 제></u> 1. 농기계 임대차 계약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p> <p>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농업기술센터 소장</u>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u>군수가 위촉</u>한다.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②~③ (생략)</p> <p>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 리·운영에 관한 사항</p> <p>제22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u>「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0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u><삭 제></u> <u><삭 제></u>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 리·운영에 관한 사항</p> <p>제22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③ <u>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 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삭 제></u></p>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자	임 차 자				
거창군수	성명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주소				
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		수량	대		
부속작업기		수량	대		
		수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대료	금	원(\)			
농기계 운반	위탁운반				
	출고	장소	희망시간	거리	요금
					킬로미터
	입고	장소	희망시간	거리	요금
				킬로미터	원
농기계 사용 계획					
기계명		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	읍면				
작업면적	제곱미터 (일 평)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4.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군수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임차인은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자: 거창군수 (인)

임차자: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4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에서 농기계 수리 시에 드는 부품대금의 무상공제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농기계 이용 확대 및 촉진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기계 수리 시 부품의 무상공제 금액 상향조정함(안 제6조)

1) 10,000원 ⇒ 30,000원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함

1) 소요되는 ⇒ 드는, 당일 ⇒ 그 날

2) 각호 ⇒ 각 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30.~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4호서식)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를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농업기계의 수리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농기계순회 수리반”을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농기계 순회수리반”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기존 제7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10,000원”을 “3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리 당일”을 “수리한 날”로 한다.

제8조·제10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7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농기계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농기계순회 수리반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운영한다.</p> <p>제3조(업무) ①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 3. 농기계 활용지도 ② 삭제(1991. 8. 12)</p> <p>제5조(예산)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p> <p>제6조(직원)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p> <p>제7조(부품대금) ①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10,000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p>	<p><u>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농업기계의수리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농기계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운영한다.</p> <p>제3조(업무)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 순회 수리 및 교육 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 3. 농기계 활용지도</p> <p>제5조(예산)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삭 제></p> <p>제6조(부품대금) ① 농기계 수리에 드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30,000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3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 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부품대금은 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u>수리 당일</u>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u>제8조(망실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u></p> <p><u>제9조(장부비치) (생략)</u></p> <p><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u></p>	<p>②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 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부품대금은 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u>수리한 날</u>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u><삭제></u></p> <p><u>제7조(장부비치) (현행 제9조와 같음)</u></p> <p><u><삭제></u></p>

[별지 제4호서식]

농 기계 수 리 일 지

년 월 일

담당자	담 당	소 장	결 재

수 리 카드 번호	기 종	기 재 번호	고장부분 및 개 소	수 리 내 용	대 체 부 속	수 리 비		소 유 자		수 리 장 소
						부속대	수수료	주 소	성 명 (남/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5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평균 49.9퍼센트인데 비해 거창군은 5.3퍼센트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임에 따라 공공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공기업 경영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함(안 별표 1)

- 1) 요금 인상률 : 15퍼센트
- 2) 요금 현실화율 : 5.3퍼센트 → 5.76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하수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2)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0. 4.~10. 2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시행규칙”을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감면) ① (생 략)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u>시행규칙</u>으 로 정한다.</p> <p><u>제33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6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u>조례시행규 칙</u>으로 정한다.</p> <p><삭 제></p>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나.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다.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 구분	사용량 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 행	개 정 안
가정용	1이상~20이하	<u>140</u>	<u>160</u>
	21이상~30이하	<u>190</u>	<u>220</u>
	31이상	<u>250</u>	<u>290</u>
일반용	1이상~30이하	<u>170</u>	<u>200</u>
	31이상~50이하	<u>210</u>	<u>240</u>
	51이상~100이하	<u>250</u>	<u>280</u>
	101이상~300이하	<u>290</u>	<u>330</u>
	301이상	<u>360</u>	<u>420</u>
산업용	1	170	200